

수 원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5275 부동산강제경매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9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정석훈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최선순위 설정	2005.04.06.근저당권		배당요구종기	2025. 6. 24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김대진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1.04.12		
	1층 우측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1.04.09.~ 2023.04.08.	55,000,000		2021.04.12.	2021.04.12.	2025.4.30.
김옥임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1.05.07		
	1층 좌측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1.05.10.~ 2023.05.09.	70,000,000		2021.05.07.	2021.03.05.	2025.5.2.
이영원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06.04.14		
<비고>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
비고란									
일괄매각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5275

[물건 1]

-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79-1
대 136㎡
-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79-1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08번길 28
위 지상
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및
소매점
1층 79.14㎡
2층 76.56㎡
지층 18.36㎡
내역:1층:주택23.7㎡소매점 55.44㎡
2층:주택 지층:대피소
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
2.30㎡

감정평가액		502,200,4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16	502,200,400	50,220,100
2회	2026.04.15	351,540,000	35,154,000
3회	2026.05.20	246,078,000	24,607,800
4회	2026.06.24	172,254,000	17,225,400
일괄매각			